

1. 제정 이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5.1.21.)에 따라 법률에서 교육부령으로 위임한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의 안전 확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나. 학생의 안전 확보(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안 제3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진행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및 자료 공유)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
 2. 학교복합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설치·운영 현황
 3. 학교복합시설 관련 연구 및 홍보 자료
 4. 학교복합시설 수요 관련 현황
 5.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법 제9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복합시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에게 학교복합시설 정보 및 지원시스템 이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조(학교복합시설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는 안전사고의 예방, 재난 및 범죄의 방지, 사건·사고 발생의 경위 파악 등을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대상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구 및 승강기
2. 학교와의 연결통로
3. 그 밖에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

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시설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해상도는 촬영 정보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200만 화소 또는 HD급 이상 확보하고, 3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확보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설치장소와 촬영, 영상정보 수집 등에 대한 안내판을 부착한다.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연 락 처	(044) 203 - 6172